

2026 제2회 가평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가평군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가평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임용기간	주당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정책지원관	행정7급 (일반임기제)	2명	임용 시부터 ~ 2027. 12. 31.	40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 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임용기간은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계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다.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마. 응시요건(다음 자격기준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

임용분야 (예정직급)	자 격 요 건
정책지원관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7급 (일반임기제)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행정, 법무, 예산·회계, 감사, 정책개발·연구·분석, 문화·관광, 복지, 농수산, 산림, 보건, 환경, 시설분야(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교통 등) 관련 업무경력 *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주40시간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1)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3)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정하여 면접시험 실시
- 4) 접수기간 내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예정

나. 2차시험: 면접시험(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토)

-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2)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3)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모집공고: 2026. 10. 20.(화) ~ 10. 27.(화)

나. 원서접수: 2026. 10. 28.(수) ~ 10. 30.(금)

※ 우편접수 시 가평군의회 채용담당자에게 반드시 접수기간 내 유선 통지(031-580-4536)

다. 서류전형 심사결과 및 면접시험 공고: 2026. 11. 9.(월)

※ 응시미달에 따른 재공고: 2026. 11. 2.(월) ~ 11. 9.(월)

※ 재공고 접수: 2026. 11. 10.(화) ~ 11. 12.(목)

라. 면접시험 시행: 2026. 11. 18.(수)

※ 면접시험 일정은 면접시험 대상인원수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5.(수)

※ 가평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본청 2층)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1) 방문접수

가) 접수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가평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가평군 수입증지” 수수료(7,000원)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나)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가능

2) 등기우편 접수

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정해 유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나) 응시수수료(7,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다) 우편봉투 겉면에 “가평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라) 응시원서는 이메일로 회신 예정(반드시 이메일 기재)

다. 제출서류(다음 번호 순서로 제출, 재생지 사용 금지, 스테이플러사용 금지)

구 분	내 용	비 고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목록별로 제출 여부 표시	[별지 제1호]

구 분	내 용	비 고
② 응시원서 1부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방문접수) 1층 종합민원실에서 수수료(7,000원) 납부 후 응시원서에 수입증지 인증받아 의정팀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7,000원) · 동봉(받을 분 기재금지)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정부 및 타 지자체 수입증지 적용 불가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해당증명서 제출 필요)	[별지 제2호]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	[별지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	[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용지 3매 이내	[별지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⑦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⑨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별지 제8호]
⑨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 뒷자리 표기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불요	
⑩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의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⑪ 경력(재직)증명서 1부	▶ <u>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u>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u>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u>해야 함 ▶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u>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u>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 발행기관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 상 직무분야 증빙이 안될 경우 [별지 제9호] 경력사실 확인증명서 추가 제출	[별지 제9호]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10호]
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응시자가 <u>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u>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구 분	내 용	비 고
⑭ 자격증(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면접시험일 기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7. 보수 및 복무

가. 일반임기제 공무원 연봉

직 급	보수체계	연봉액(천원)	근무시간	비고
일반임기제 7급	성과급적 연봉제	50,272	주40시간	

※ 공무원 보수업무 규정의 연봉 하한액으로 초임연봉 책정

나.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직급보조비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다. 복무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가평군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응시 불가합니다.

나. 시험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최종시험(면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청 시)

- 마.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합니다.
-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카.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타.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가평군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파.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의회사무과 의정팀(031-580-4536)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부서)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임기
경기도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일반임기제7급	2명	~2027.12.31.

주요업무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

필요역량	▶ 정책분석 및 문제해결능력 ▶ 법령·제도 분석능력 ▶ 의정활동지원 및 의사소통능력
------	--

필요지식	▶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제도에 관한 지식 ▶ 지방자치 관련 법령·조례 및 의사절차에 관한 지
------	---

응시요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행정, 법무, 예산회계, 감사, 정책개발·연구·분석, 문화·관광, 복지, 농수산, 산림, 보건, 환경, 시설 분야(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교통 등) 관련 업무경력 *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